

재해 후 소비자 보호조치 캘리포니아 유선통신 고객용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귀하의 거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유선통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장¹을 받거나, 유선통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²되는 경우, 유선통화 제공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날로부터 최단 12개월 내지 캘리포니아비상서비스국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한 기간 동안 가정 고객 및 소규모 사업(5개 회선 이하)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1. 원거리 자동전송(remote call forwarding), 자동전송 원격 접속(remote access to call forwarding), 자동전송의 각종 사양(call forwarding features), 메시지 서비스(messaging services) 개시에 필요한 1회의 활성화수수료 면제
2. 원거리 자동전송, 자동전송 원격 접속, 자동전송, 자동전송의 각종 사양,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1개월치 요금 면제
3. 고객의 임시 주거지 또는 신규 영구 주거지에 서비스를 설치하는 비용 및 고객이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간 후의 서비스 설치 비용 면제
4. 고객이 ‘내부배선플랜(Inside Wire Plan)’을 현재 이용 중인지에 관계 없이 임시 거주지에 설치하는 1개의 잭 및 관련 배선작업 수수료 면제
5. 당사의 내부배선플랜을 이용할 경우 영구 거주지로 귀환 시 최대 5개의 무료 잭 및 관련 배선작업 수수료 면제
6. 당사의 내부배선플랜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영구 거주지로 귀환 시 1개의 무료 잭 및 관련 배선작업 수수료 면제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¹ “지장”이란 (1) 전화기의 신호음이 들리지 않거나, (2) 통화가 연결되지 않던가 아니면 서비스가 전혀 기능을 못하거나, (3) 재해로 인하여 서비스가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도 받을 수도 없어 911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일컫음.

² “저하”는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음을 깨닫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예를 들어 잡음, 연결 실패, 지나치게 빠른 통화 중 신호음, 그리고/또는 911 전화를 포함하여 신호가 가다가 끊어지는 것 등이 있음.